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					
제출인	상호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주소:						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	건물명: 축사	위치: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508-3외1필지					
	연면적(m ²) -m ²	작업기간:2020.10.07 - 2020.10.30					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m ²)·부피(m ³)] 지붕재(슬레이트) 969.38m ²						
측정기관	대표자 (주)새날환경안전연구원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29번길 15						
	측정자/분석자 : 박 대 한 / 노 현 영						
측정 일시	2020.10.10. ~ 2020.10.11.			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
	붙임 1 참조						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		비산측정 종료 사진		비고	
붙임 2 참조							
<p>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0 년 10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성군수 귀하</p>							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				수수료 없음	
210mm×297mm[백상지 80g/m ² (재활용품)]							

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

공사명: 축사, 퇴비사 석면해체

(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508-3외1필지)

2020. 10



(주) 새날 환경 안전 연구원

SaeNal Environment Safety Institute

[붙임1] 석면비산 측정결과

공기중시료 분석결과서 Asbestos & other fibers by PCM

시료 번호	측정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min)	측정 일시 (측정 시간)	측정결과 (기준:0.01(개)f/cc)	검출석면
#1	부지경계선	에어샘플링펌프	10.25	2020.10.10 08:00 ~ 12:15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-
#2	부지경계선	에어샘플링펌프	10.22	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-
#3	부지경계선	에어샘플링펌프	10.19	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-
#4	부지경계선	에어샘플링펌프	10.20	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-
#5	작업장주변	에어샘플링펌프	10.21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6	위생설비입구	에어샘플링펌프	10.18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7	폐기물 반출구	에어샘플링펌프	10.23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8	폐기물 반출구	에어샘플링펌프	10.24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9	폐기물 반출구	에어샘플링펌프	10.27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10	폐기물 반출구	에어샘플링펌프	10.26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11	폐기물 반출구	에어샘플링펌프	10.23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12	폐기물 반출구	에어샘플링펌프	10.15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B1					0.000	
#B2					0.000	

검출한계 = $(120,000 / (V \times N)) \times 0.005$, 0.002~0.005개(f/cc) 이하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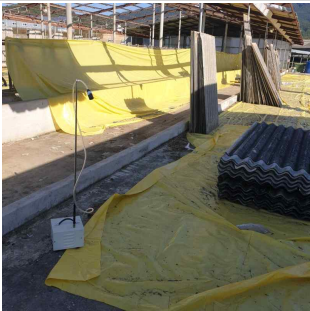







N = 계수 시야 수, V = 총 포집유량(L)

검출석면 : 석면 및 섬유상 먼지의 길이 5 μ m 이상, 직경 0.25 μ m~3 μ m, 길이 대 직경비 3:1을 기준으로 함.

- 각 측정지점은 작업여건과 풍향,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측정위치 선정함.
- 각 측정시간은 작업진행도에 따라 고려하여 측정함.

[붙임2] 비산측정사진
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	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#1 부지경계선				#2 부지경계선			
	측정시작시간 : 08:00	측정종료시간 : 12:10			측정시작시간 : 08:00	측정종료시간 : 12:10	
#3 부지경계선				#4 부지경계선			
	측정시작시간 : 08:05	측정종료시간 : 12:15			측정시작시간 : 08:05	측정종료시간 : 12:15	
#5 작업장주변				#6 위생설비 입구			
	측정시작시간 : 08:10	측정종료시간 : 10:20			측정시작시간 : 08:20	측정종료시간 : 09:10	
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	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#7 폐기물 반출구				#8 폐기물 반출구			
	측정시작시간 : 09:30	측정종료시간 : 10:20			측정시작시간 : 09:30	측정종료시간 : 10:20	
#9 폐기물 반출구				#10 폐기물 반출구			
	측정시작시간 : 09:35	측정종료시간 : 10:25			측정시작시간 : 10:40	측정종료시간 : 11:30	
#11 폐기물 반출구				#12 폐기물 반출구			
	측정시작시간 : 10:40	측정종료시간 : 11:30			측정시작시간 : 10:45	측정종료시간 : 11:35	

[붙임1] 석면비산 측정결과

공기중시료 분석결과서 Asbestos & other fibers by PCM

시료 번호	측정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min)	측정 일시 (측정 시간)	측정결과 (기준:0.01(개)f/cc)	검출석면
#1	폐기물 보관지점	에어샘플링펌프	10.23	2020.10.11 11:40 ~ 12:35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2	폐기물 보관지점	에어샘플링펌프	10.24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3	폐기물 보관지점	에어샘플링펌프	10.20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4	폐기물 보관지점	에어샘플링펌프	10.21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5	폐기물 보관지점	에어샘플링펌프	10.19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6	폐기물 보관지점	에어샘플링펌프	10.22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B1					0.000	
#B2					0.000	

검출한계 = $(120,000 / (V \times N)) \times 0.005$, 0.002~0.005개(f/cc) 이하

N = 계수 시야 수, V = 총 포집유량(L)

검출석면 : 석면 및 섬유상 먼지의 길이 5 μ m 이상, 직경 0.25 μ m~3 μ m, 길이 대 직경비 3:1을 기준으로 함.

[붙임2] 비산측정사진
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	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#1 폐기물 보관지점				#2 폐기물 보관지점			
	측정시작시간 : 11:40	측정종료시간 : 12:30			측정시작시간 : 11:40	측정종료시간 : 12:30	
#3 폐기물 보관지점				#4 폐기물 보관지점			
	측정시작시간 : 11:40	측정종료시간 : 12:30			측정시작시간 : 11:45	측정종료시간 : 12:35	
#5 폐기물 보관지점				#6 폐기물 보관지점			
	측정시작시간 : 11:45	측정종료시간 : 12:35			측정시작시간 : 11:45	측정종료시간 : 12:35	

제2018-120001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(주)새날환경안전연구원	
소재지	(61020)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15 2층 201호()	
대표자성명	최진영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할지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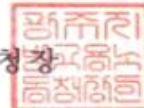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8. 3. 5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

(주) 새 날 환 경 안 전 연 구 원

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29번길 15

고용노동부지정석면조사 제2018-120001호

대표전화 : 062-571-3585

팩 스 : 062-572-3585

이 메 일 : toskf2470@hanmail.net